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875
----------	-----

2023년 7월 5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나. 제출일 : 2023년 5월 30일

다. 회부일 : 2023년 6월 1일

라. 상정일 : 제319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2023년 7월 3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정상훈)

가. 제안이유

- 지역상생발전위원회를 상설 운영에서 비상설 운영으로 전환 및 전문가 중심의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임명직 위원 규정 삭제(안 제9조제4항제2호)
- 위원회 임기 및 연임 규정 삭제(안 제9조제5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 다. 입법예고(2023. 4. 13. ~ 5. 3.) 결과: 의견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가. 조례 개정 입법취지 및 필요성 검토

-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상생발전위원회(2020년 12월 구성, 이하 ‘위원회’로 약칭)의 비상설 운영 전환을 위해 임명직 위원 규정을 삭제하고(안 제9조제4항제2호), 위원회 임기 및 연임 규정을 삭제(안 제9조제5항)하는 등 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본 조례는 서울시와 타 지역간 상생교류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여가와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고, 교류협력 지역의 사회·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각종 지원사항을 규정하고자 2015년 10월 8일 의원발의(김진철 의원 외 14명)로 제정되었으며, 동 위원회는 2020년 7월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이후 운영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보여짐.

[조례 연혁]

- 2015. 10. 8.: 조례 제정
- 2019. 5. 16.: 조례 일부개정
 - 상생교류 협력사업의 추진방식이 민간위탁으로만 규정되어 서울시의 직접 수행, 보조금 지원 방식을 추가로 규정하고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약 체결과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
- 2019. 12. 31.: 조례 일부개정
 - 어렵고 어색한 일본식 한자어와 표현을 일괄정비하여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 또는 통용되는 한자어로 개선
- 2020. 7. 16.: 조례 일부개정
 -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역상생발전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명시
- 2021. 9. 30.: 조례 일부개정
 - 지역상생발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일부 미비된 사항을 추가

- 본 개정안은 위원회를 전문가 중심의 비상설 운영으로 전환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려는 것으로 보임.

[지역상생발전위원회 운영 개요]

□ 위원회 개요

- 위원수 : 10명
- 임 기 : 2년, 1회 연임 가능 ※ 위원회 존속기한 2023. 9.30
- 자 격 : 시의원, 관련 실·본부·국장, **상생교류 사업 전문가 등**
- 기 능 : 지역상생 추진계획 자문, 상생교류사업 분야별 사업계획 및 성과 자문, 지역 상생교류정책 개발·모니터링 및 자문 등

□ 위원회 개최현황

연번	개최일자	참석인원	안 건
1	'20. 12. 15.	10명	· 위원장 선출, 지역상생교류사업 보고 및 논의
2	'21. 2. 3.	7명	· 지역상생 종합계획 수립방향 및 주요 상생사업 추진 자문
3	'21. 4. 12. ~4. 14.	3명(서면)	· 서울-지방 연계 온라인 방과 후 학습지원 사업추진 보고 · '21년 지역상생포럼 및 박람회 진행경과 보고
4	'21. 5. 12.	5명	· 포럼·박람회 착수보고 발표 및 행사 추진방향 자문
5	'21. 9. 24.	12명(서면)	· 지역상생 포럼 및 박람회 변경 추진 서면 보고
6	'23. 4. 3	9명(서면)	· 지역상생교류 추진계획 수립방향 및 주요 상생사업 추진 자문

- 출처: 행정국 제출자료

- 서울시 기획조정실(조직담당관)에서는 2023년 3월 “2023년 위원회 정비 및 운영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비효율적 위원회 정비방안(비상설, 폐지, 통합) 중 비상설 전환 대상 위원회(27개)에 ‘지역상생발전위원회’를 포함하였음.

[2023년 위원회 정비방향 및 정비계획(비상설)]

출처: “2023년 위원회 정비 및 운영개선계획”(조직담당관) 발제

① 비효율적 위원회 정비

□ 정비방향

- **비상설** : 목적·기능상 운영 필요하지만 회의실적 저조한 위원회
 - (세부기준) 22년 1년간 1회 이하 또는 3년간 3회 이하 개최 위원회
- **폐지** : 행정여건 변화 등으로 운영 필요성이 저하된 위원회
 - (세부기준) 행정여건 변화, 설치목적 달성 등 운영 필요성이 저하된 위원회
- **통합** : 다른 위원회와 유사·중복 기능 수행 위원회
 - (세부기준) 다른 위원회와 설치목적과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위원회

□ 정비계획

① **비상설** ※ 위원임기가 없는 비상설 회의체 (안전 발생시 한시적으로 위원회 구성, 회의 개최)

- 검토대상 : 80개('22년 1년간 1회 이하(76개) 또는 3년간 3회 이하(4개) 개최 위원회)
- 제외대상 : 54개('22년 신설 12개, 통합대상 3개, 폐지대상 7개, 업무증가 예상 등 32개))
- 정비대상 : 27개 위원회 ※1개 위원회는 검토대상 아님, 실국 의견을 반영하여 추가(향후 안전감소 예상)
- 정비방법 : (조례개정) 17개 위원회, (법령개정 건의) 10개 위원회
 - (조례개정) 조례에서 위원 임기 규정 삭제 (※행정안전부 비상설 표준안 참고)

현행	개정안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안전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 (법령개정 건의) 조례로 비상설위원회로 정비 가능하도록 위원회 설치근거 법령에 규정된 위원 임기조항 삭제 건의

- 한편, 행정안전부에서도 제도적 절차, 주민 안전 등 필수적 사항을 다루지만, 안전 발생 빈도가 적은 위원회의 경우 정비방안으로 ‘비상설화’로의 전환을 제시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기본방향]

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2022. 7월) 발췌

< 기본 방향 >

정비 대상		정비 방안
법령상 임의위원회 / 조례상 위원회	신설 위원회	신설 최대한 억제
	미개최위원회 · 3년간 미개최	⇒ 폐지
	· 1년간 미개최	⇒ 위원회 활성화 또는 정비 계획 수립
	비효율위원회 · 기능 유사·중복 * 연 3회 미만 개최, 구성·운영 개선 필요 위원회 등 · 기능 독립	⇒ 통·폐합 ⇒ (목적달성) 폐지 (한시필요) 존속기한 설정 (내부안건) 협의체 전환 (존속필요·안건少) 비상설화
법령상 의무설치 위원회 (행안부→해당부처, 법령정비 요청)	· 미개최 · 비효율	⇒ (사전) 사전협의제도 활성화 (사후) 폐지 또는 임의규정화 검토

(비상설화) 제도적 절차, 주민 안전 등 필수적 사항*을 다루지만, 안전 발생 빈도가 적은 경우,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

* 주민투표청구 심의, 주민 생명·안전·건강 관련 심의, 사고조사 관련 심의 등

< 조례 개정 예시 >

< 개정 전 >	< 개정 후 >
①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의 자문을 위해…건강도시운영위원회를 둔다.	① <좌 동>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u>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개정)</u>

- 다만, 위원회의 상설 및 비상설 설치의 장단점 분석과 비상설 전환의 적정성 여부 및 위원회 운영관련 세부 개정 사항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나. 세부 내용 검토

1) 임명직 위원 규정 삭제 및 위촉직 위원의 임기와 연임 규정 삭제

(안 제9조)

- 안 제9조제4항제2호는 현행 임명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는 위원회 위원을 위촉직으로만 구성하도록 하고, 임명직 위원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이고, 안 제9조제5항은 비상설 운영으로의 전환을 위해 위촉직 위원의 임기 및 연임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p>제9조(위원회의 설치) ① ~ ③ (생략)</p> <p>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u>임명하거나 위촉한다.</u></p> <p>1. (생략)</p> <p>2. <u>서울특별시 지역 간 상생교류 소관 실·본부·국장</u></p> <p>3. 4. (생략)</p> <p>⑤ <u>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u></p> <p>⑥ (생략)</p>	<p>제9조(위원회의 설치)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u>위촉한다.</u></p> <p>1. (현행과 같음)</p> <p><u><삭제></u></p> <p>3. 4. (현행과 같음)</p> <p>⑤ <u>위원회는 안전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u></p> <p>⑥ (현행과 같음)</p>

- 지역상생교류 관련 구체적인 사업은 다양한 분야가 관련될 수 있는 만큼, 위원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가 위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안전별로 심의·의결하고 자동 해산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보임.

- 서울시 지역상생발전위원회는 2022년에는 개최실적이 없고 2023년 6월 16일 현재까지 개최실적은 1회에 불과한 바, 비상설화를 통한 위원회 정비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다만, 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하는 것이 그동안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안전 발굴 및 위원회 운영 의지 부족으로 개최실적이 저조했던 것은 아닌지, 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요소는 없는지와 전문가 인력풀이 제한적일 경우 심의 안전 발생시마다 위원을 새롭게 위촉하는 반복적 행정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소지는 없는지 등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관련 사항의 위원회 일반조례 규정 적용

(안 제9조의3 및 제9조의4)

- 안 제9조의3 및 제9조의4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관련 사항에 대해 위원회 일반규정인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1)를 적용하려는 것임.

-
- 1)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전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전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p>제9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p> <p>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p> <p>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p>	<p>제9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회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다.</p>
<p>제9조의4(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p> <p>1. ~ 4. (생략)</p> <p>5. 제9조의3제1항의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p> <p>6. (생략)</p>	<p>제9조의4(위원의 해촉) -----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서 정하는 제척사유 -----</p> <p>6. (현행과 같음)</p>

- 동 개정안은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관련 사항에 대해 위원회 일반규정에 따르도록 하여 위원회 관련 필수규정이 중복으로 인해 과다해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으로 입법경제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3) 위원회 회의개최 요건 변경(안 제9조의5)

- 안 제9조의5는 위원회 회의 소집요건을 ‘안건이 발생하여 시장의 개최 요구가 있을 때’로 일원화하고, 회의 개의 및 의결 정족수를 삭제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p><u>제9조의5(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소집한다.</u></p> <p><u>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u></p> <p><u>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u></p> <p><u>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u></p> <p><u>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p>	<p><u>제9조의5(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발생하여 시장의 개최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u></p>

- 동 개정안은 위원회를 비상설 운영 시 안전처리 후 해산됨에 따라, 기존 재적위원 및 위원장이 없으므로 규정 내용을 이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보임.
- 다만, 회의 개의 및 의결 정족수 규정 미비로 인해 심의 결과의 신뢰도가 저하될 우려 및 상반되는 의견 대립 시 의결방안 부재로 회의운영에

혼선의 소지는 없는지에 대한 논의와 함께, 관련 세부지침을 규칙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여지가 있다고 사료됨.

※ 행정국에서는 동 위원회가 자문 성격이므로 다양한 의견이 나오더라도 모두 참고하기 때문에 개의 및 의결 정족수 규정은 실익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음.

4) 위원회 존속기간 연장(안 제9조의6)

- 안 제9조의6은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현행 2023년 9월 30일까지를 2028년 6월 30일까지로 4년 9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의6(위원회의 존속기한) 위 원회의 존속기한은 <u>2023년 9월</u> <u>30일</u> 까지로 한다.		제9조의6(위원회의 존속기한) -- -----		<u>2028년 6월</u> <u>30일</u> -----.

- 동 조례안은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로써 위원회의 존속기간 연장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 다만,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위원회의 존속기간)제2항2)에서는 위원회 존속기한을 5년의 범위내로 규정하고 있고, 기한연장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는 바, 기간 연장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는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동 위원회는 2020년 12월 최초 구성되어 2023년 6월 현재 2년 6개월 이미 경과함.

※ 행정국은 서울시 법무담당관의 법제심사 결과 존속기한 연장일(안)이 결정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음.

- 당초(안) : 존속기한 규정 삭제 ⇒ 법제심사 후 변경 : 존속기한 2023. 9. 30. ~ **2028. 6. 30.**

2)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위원회의 존속기한) ① 시장 등은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 또는 규칙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 또한, 위원회 존속기한 내 위원회 운영이 의미없다고 판단되거나, 개최실적이 부진할 경우 폐지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5) 부 칙(안 부칙 제2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역 상생발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이 조례 시행일에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 안 부칙 제2조는 동 위원회를 비상설화하는 안 제9조에 부합하게 기존 위원의 임기관련 사항을 명확히 하는 경과조치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위원의 임기 적용에 따른 혼란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경과조치인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를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회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다.

제9조의4제5호 중 “제9조의3제1항의 사유”를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서 정하는 제척사유”로 한다.

제9조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의5(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발생하여 시장의 개최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제9조의6 중 “2023년 9월 30일”을 “2028년 6월 30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역 상생발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이 조례 시행일에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위원회의 설치) ① ~ ③ (생략)</p> <p>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u>임명하거나 위촉한다.</u></p> <p>1. (생략)</p> <p>2. <u>서울특별시 지역 간 상생교류 소관 실·본부·국장</u></p> <p>3.·4. (생략)</p> <p>⑤ <u>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u></p> <p>⑥ (생략)</p> <p>제9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u>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u></p> <p>② <u>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u></p>	<p>제9조(위원회의 설치)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u>위촉한다.</u></p> <p>1. (현행과 같음)</p> <p><u><삭제></u></p> <p>3.·4. (현행과 같음)</p> <p>⑤ <u>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u></p> <p>⑥ (현행과 같음)</p> <p>제9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u>위원회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다.</u></p>

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의4(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 4. (생략)
5. 제9조의3제1항의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생략)

제9조의5(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소집한다.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제9조의4(위원의 해촉) -----

-----.

1. ~ 4. (현행과 같음)
5.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서 정하는 제척사유

6. (현행과 같음)

제9조의5(회의) 위원회 회의는 안건이 발생하여 시장의 개최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한다.

제9조의6(위원회의 존속기한) 위
원회의 존속기한은 2023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제9조의6(위원회의 존속기한) --
----- 2028년 6월 3
0일-----.